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하고자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파 주 시



-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장 폐쇄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공고기간: 2026. 6. 25. ~ 2026. 7. 27.
-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1호
-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내용
숙박업 (일반)	샤이나 (SHAINA)	정*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44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장 폐쇄명령

- 청문일시: 2026. 7. 27. (월) 14:00 ~ 15:00 ※ 반드시 위생과 우선 방문(031-940-8532)
 - 청문장소: 파주시청 민원동 지하1층 청문실(구내식당 옆)
 - 청문주재자: 건강증진과 건강100세팀장
 - 의견제출기한: 2026. 7. 27. (월) 18:00까지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과주시 위생과 담당자(☎ 031-940-85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JU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과징금 대체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류 제출(과주세무서 발급)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전화940-8532, 팩스940-4439)하시기 바랍니다.